

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

소관부서 : 농업기술센터(농업진흥과)

제정 2001· 6· 21 조례 제 379호
개정 2005· 7· 27 조례 제 579호
일부개정 2022· 8· 11 조례 제185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· 지식· 정보화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농업과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· 7· 27>

제2조(상의 명칭) 이 상의 명칭은 이천시농업인대상(이하 “상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3조(시상부문과 인원) ①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.

1. 쌀생산부문
2. 원예· 특작부문
3. 과수부문
4. 축산부문
5. 여성농업인부문

② 시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을 통합하여 총 3명 이내로 한다. <개정 2005· 7· 27, 2022· 8· 11>

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의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. <개정 2005· 7· 27>

제4조(후보자의 자격) ① 후보자는 이천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첨단기술농업· 고품질농업· 수출농업 등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이 높아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. <개정 2005· 7· 27, 2022· 8· 11>

② 개인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문의 업종에 연속하여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.

③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개인은 다시 수상할 수 없다. <개정 200

5·7·27〉

제5조(후보자의 추천) ① 후보자의 추천은 농축산관련 협동조합장, 읍면동농업인상담소장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.

②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말까지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〈개정 2005·7·27, 2022·8·11〉

1. 추천(신청)서 1통
2. 공적조서 1통
3. 개인이력서 1통
4. 기타 공적증빙자료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수상자의 결정) ① 수상자는 「농업산·학협동심의회 규정」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이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에서 동 규정에 의한 회의운영 절차에 따라 심사·결정한다. 〈개정 2022·8·11〉

② 공정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심의회의 위원중 당해 읍면동 후보자 또는 소속단체 회원을 심사 결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.

제7조(심사기준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할 때에는 신청서, 추천서, 자격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서 등에 의하여 심사하되,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지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현지조사) 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현지 조사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자료제출요구) 심의회는 후보자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(심사결과의 통보) 심의회는 수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2·8·11〉

제11조(시상)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이천농업인축제 기간중에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. <개정 2022·8·11>

제12조(수상자에 대한 예우)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예우할 수 있다.

1. 경기도 및 중앙단위의 각종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
2. 국내·외 연수기회 부여
3.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·7·27 조례 제57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·8·11 조례 제185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